

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 변경 대비표

1. 대상 펀드 : 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
2. 변경 대상 : 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3. 변경 사유 :

| 구분 | 주요 변경 사항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집합투자규약 | 전환 가능한 투자신탁 신설 |
| 일괄신고서 | ①전환 가능한 투자신탁 신설 ②전환 횟수 제한 삭제 |

4. 효력 발생(예정)일 : 2022년 10월 21일

5. 세부 변경 사항 :

◆ **집합투자규약**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제52조의4(투자신탁의 전환) | <p>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들 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<생략></p> <p>5. <신설></p> <p>②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형(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)에서 주식혼합형(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)으로 전환을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(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(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에 전환한다.</p> <p>③수익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혼합형(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)에서 채권형(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) 및 다른 주식혼합형(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)으로 전환을 하는 때에는</p> | <p>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들 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<좌동></p> <p>5. 신영신증개인연금고배당인컴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</p> <p>②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형(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)에서 주식혼합형(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고배당인컴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)으로 전환을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(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(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에 전환한다.</p> <p>③수익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혼합형(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)에서 채권형(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) 및 다른 주식혼합형(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고배</p> |

| | |
|--|---|
| <p>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)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에 전환한다.</p> <p>④ 수익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혼합형(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)에서 채권형(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) 및 주식혼합형(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)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)에 전환한다.</p> <p><u>⑤ <신설></u></p> <p>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.</p> <p>1. 제2항의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.</p> <p>2. 제3항 및 제4항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한다. 다만,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</p> <p>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에 한한다.</p> | <p><u>당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</u>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)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에 전환한다.</p> <p>④ 수익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혼합형(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)에서 채권형(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) 및 주식혼합형(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, <u>신영신증개인연금고배당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</u>)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)에 전환한다.</p> <p><u>⑤ 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혼합형(신영신증개인연금고배당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)에서 채권형(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) 및 다른 주식혼합형(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)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(15시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의 기준가격으로 제7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)에 전환한다.</u></p> <p>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.</p> <p>1. <좌동></p> <p>2. 제3항 내지 제5항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한다. 다만,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</p> <p>⑦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에 한한다.</p> |
|--|---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⑦수익자는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. | ⑧<좌동> |
| 제52조의5(투자신탁계약의 이전) | ① ~ ②. <생략> ③ 제1항에 의한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청구의 접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일괄 이전 처리한다. 1. ~ 3. <생략> 4. <신설> | ① ~ ②. <좌동> ③ 제1항에 의한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청구의 접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일괄 이전 처리한다. 1. ~ 3. <좌동> 4.주식혼합형[(신영신증개인연금고배당인컴증권 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)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3영업일(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7영업일(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)에 이전합니다. |
| 부칙 | <신설> | 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, 적용한다. |

◆ 일괄신고서 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|--|--|
| 요약 | <p>전환절차 및 방법</p> <p>이 투자신탁은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된 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.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전환이 가능하며, 전환 횟수는 연 4회에 한하고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</p> <p><전환대상 투자신탁></p> <p>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</p> <p>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</p> <p>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</p> <p>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</p> <p><신설></p> | <p>전환절차 및 방법</p> <p>이 투자신탁은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된 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.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전환이 가능하며, 전환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. 또한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</p> <p><전환대상 투자신탁></p> <p>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</p> <p>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</p> <p>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</p> <p>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</p> <p>신영신증개인연금고배당인컴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</p> |
| 본문 | <p>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p> <p>가. <생략></p> <p>나. 전환형 구조</p> <p>(1)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하기 4개 투자신탁의 범위내에서 투자대상 투자신탁을 변경(전환)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구하지 아니합니다.</p> <p><신설></p> | <p>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<좌동></p> <p>나. 전환형 구조</p> <p>(1)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하기 5개 투자신탁의 범위내에서 투자대상 투자신탁을 변경(전환)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구하지 아니합니다.</p> |

| | |
|--|--|
| <p>(2)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<별첨> : 정정전1)</p> | <p>- <u>신영신증개인연금고배당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</u> - <u>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</u> - <u>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</u> - <u>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</u> - <u>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</u></p> <p>(2)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<별첨> : 정정후1)</p> |
| <p>제2부 11. 매입,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 <p>가. 개인연금저축투자신탁에 관한 사항</p> <p>(1) <생략></p> <p>※ 추가가입의 제한: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의하여 신규로 가입이 제한됩니다. 다만, 신영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 또는 신영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에서 동 투자신탁으로 전환하거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다른 개인연금저축에서 동 투자신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나. <생략></p> <p>다. <생략></p> <p>(8) 전환</p> <p>(1) 이 투자신탁은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된 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.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전환이 가능하며, 전환 횟수는 연 4회에 한하고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</p> <p><전환대상 투자신탁></p> <p>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</p> <p>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</p> <p>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</p> <p>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</p> | <p>제2부 11. 매입,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 <p>가. 개인연금저축투자신탁에 관한 사항</p> <p>(1) <좌동></p> <p>※ 추가가입의 제한: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의하여 신규로 가입이 제한됩니다. 다만, <u>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 또는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고배당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</u>에서 동 투자신탁으로 전환하거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다른 개인연금저축에서 동 투자신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나. <좌동></p> <p>다. <좌동></p> <p>라. 전환</p> <p>(1) 이 투자신탁은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된 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.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전환이 가능하며, 전환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. 또한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</p> <p><전환대상 투자신탁></p> <p>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</p> <p>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</p> <p>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</p> <p>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</p> |

| | |
|--|---|
| <p><u><신설></u></p> <p>(2) 전환시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및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(수익증권매입일)</p> <p><u><별첨> : 정정전2)</u></p> <p>(9) 이전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한 종목의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(1) ~ (2) <생략></p> <p>(3) 이전처리일: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청구의 접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일괄 이전 처리합니다.</p> <p>① ~ ③ <생략></p> <p><u>④ <신설></u></p> | <p><u>신영신증개인연금고배당인컴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</u></p> <p>(2) 전환시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및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(수익증권매입일)</p> <p><u><별첨> : 정정후2)</u></p> <p>마. 이전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한 종목의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(1) ~ (2) <좌동></p> <p>(3) 이전처리일: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청구의 접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일괄 이전 처리합니다.</p> <p>① ~ ③ <좌동></p> <p><u>④ 주식혼합형[신영신증개인연금고배당인컴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]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3영업일(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7영업일(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)에 이전합니다.</u></p> |
| 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(1) 투자신탁 수수료 <u><별첨> : 정정전3)</u></p> | 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(1) 투자신탁 수수료 <u><별첨> : 정정후3)</u></p> |

<별첨>

● 정정전1)

- 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---|---|
| 주요 투자대상 | 채권 60% 이상 |
| 주요 투자전략 | 이 투자신탁은 국채 및 통안채 중심으로 우량채권 및 어음 등에 60% 이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합니다. |
| 주요 투자위험 | 금리변동위험, 신용위험,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|
| 기타 유의사항 |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|

- 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---|---|
| 주요 투자대상 | 모투자신탁(주식) : 60%이하 모투자신탁(채권) : 60%이하 |
| 주요 투자전략 | 이 투자신탁의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재산의 60%이하 범위내로 하며, 채권 및 유동성 투자와 주식투자를 상호 균형있게 운용함으로써 이자소득과 주식투자에 따르는 자본이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합니다. |
| 주요 투자위험 | 주식가격 변동위험, 금리변동위험, 신용위험,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|
| 기타 유의사항 |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|

- **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**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---|---|
| 주요 투자대상 | 모투자신탁(주식): 60%이하 모투자신탁(채권): 60%이하 |
| 주요 투자전략 | 이 투자신탁의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재산의 60%이하 범위내로 하며, 채권 및 유동성 투자와 주식투자를 상호 균형있게 운용함으로써 이자소득과 주식투자에 따르는 자본이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합니다. |
| 주요 투자위험 | 주식가격 변동위험, 금리변동위험, 신용위험,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|
| 기타 유의사항 |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|

● **정정후1)**

- **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**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---|---|
| 주요 투자대상 | 채권 60% 이상 |
| 주요 투자전략 | 이 투자신탁은 국채 및 통안채 중심으로 우량채권 및 어음 등에 60% 이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합니다. |
| 주요 투자위험 | 금리변동위험, 신용위험,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|
| 기타 유의사항 |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|

- **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**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---|---|
| 주요 투자대상 | 모투자신탁(주식) : 60%이하 모투자신탁(채권) : 60%이하 |
| 주요 투자전략 | 이 투자신탁의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재산의 60%이하 범위내로 하며, 채권 및 유동성 투자와 주식투자를 상호 균형있게 운용함으로써 이자소득과 주식투자에 따르는 자본이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합니다. |
| 주요 투자위험 | 주식가격 변동위험, 금리변동위험, 신용위험,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|

| | |
|---------|---|
| 기타 유의사항 |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|
|---------|---|

-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---|--|
| 주요 투자대상 | 모투자신탁(주식): 60%이하 모투자신탁(채권): 60%이하 |
| 주요 투자전략 | 이 투자신탁의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재산의 60%이하 범위 내로 하며, 채권 및 유동성 투자와 주식투자를 상호 균형있게 운용함으로써 이자소득과 주식투자에 따르는 자본이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합니다. |
| 주요 투자위험 | 주식가격 변동위험, 금리변동위험, 신용위험,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|
| 기타 유의사항 |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|

- 신영신증개인연금고배당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---|---|
| 주요 투자대상 | 모투자신탁(주식혼합): 90% 이상 |
| 주요 투자전략 |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100% 이하(해외주식에는 신탁재산 총액의 60% 미만), 우량 채권 및 어음 등에 50% 미만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해당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 추구하고 배당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. |
| 주요 투자위험 | 원본손실위험,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, 국가위험,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, 시장위험, 신용위험,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, 환율변동위험, 과세위험 등 |
| 기타 유의사항 |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|

● **정정전2)**

<채권형 투자신탁에서 주식혼합형으로 전환청구>

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에서 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 및 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(주식혼합)으로 전환청구

| 기준가격적용일 | 수익증권 매입일 |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|
|--|--|-----------------|
|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(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4영업일) 의 기준가격 |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(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4영업일) 에 전환 | 판매회사의 영업일 |

<주식혼합형에서 채권형 및 다른 주식혼합형으로 전환청구(1)>

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과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

식혼합) 에서 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, 및 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(채권)으로 전환청구

| 기준가격적용일 | 수익증권 매입일 |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|
|--|---|-----------------|
|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(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3영업일) 의 기준가격 |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전환(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4영업일) 의 기준가격 | 한국거래소 개장일 |

<주식혼합형에서 채권형 및 다른 주식혼합형으로 전환청구(2)>

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에서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 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과 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 신탁(채권)으로 전환청구

| 기준가격적용일 | 수익증권 매입일 |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|
|--|--|-----------------|
|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(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4영업일) 의 기준가격 |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(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)에 전환 | 한국거래소 개장일 |

(주1)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에 한합니다.

(주2) 수익자는 동일계좌내 저축수익증권의 일부전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● **정정후2)**

<채권형 투자신탁에서 주식혼합형으로 전환청구>

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에서 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 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(주식혼합) 또는 신영신증개인연금고배당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으로 전환청구

| 기준가격적용일 | 수익증권 매입일 |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|
|---|---|-----------------|
|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(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 의 기준가격 |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(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 에 전환 | 판매회사의 영업일 |

<주식혼합형에서 채권형 및 다른 주식혼합형으로 전환청구(1)>

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과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 식혼합) 에서 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고배당인컴증 권전환형자투자신탁(주식혼합) 또는 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으로 전환청구

| 기준가격적용일 | 수익증권 매입일 |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
| | | |
|---|--|-----------|
|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(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) 의 기준가격 |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전환(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 의 기준가격 | 한국거래소 개장일 |
|---|--|-----------|

<주식혼합형에서 채권형 및 다른 주식혼합형으로 전환청구(2)>

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에서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고배당인컴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 또는 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으로 전환청구

| 기준가격적용일 | 수익증권 매입일 |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|
|---|--|-----------------|
|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(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 의 기준가격 |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 (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)에 전환 | 한국거래소 개장일 |

<주식혼합형에서 채권형 및 다른 주식혼합형으로 전환청구(3)>

신영신증개인연금고배당인컴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에서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 또는 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으로 전환청구

| 기준가격적용일 | 수익증권 매입일 |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|
|---|---|-----------------|
|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(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 의 기준가격 |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(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)에 전환 | 한국거래소 개장일 |

(주1)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에 한합니다.

(주2) 수익자는 동일계좌내 저축수익증권의 일부전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● **정정전3)**

| 명칭 (클래스) | 가입자격 | 수수료율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선취 판매 수수료 | 후취 판매 수수료 | 환매 수수료 | 전환 수수료 |
| 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(주식혼합) | (주1) | 없음 | 없음 | 없음 | 없음 |
| 부과기준 | | 가입시 | 환매시 | 환매시 | 환매시 |

(주1) 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 또는 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에서 동 투자신탁으로 전환하거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다른 개인연금저축에서 동 투자신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

● **정정후3)**

| 명칭 (클래스) | 가입자격 | 수수료율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선취 판매 수수료 | 후취 판매 수수료 | 환매 수수료 | 전환 수수료 |
| 신영신증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 | (주1) | 없음 | 없음 | 없음 | 없음 |
| 부과기준 | | 가입시 | 환매시 | 환매시 | 환매시 |

(주1) 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(채권) 또는 신영신증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신영신증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, **신영신증개인연금고배당인컴증권전환형투자신탁(주식혼합)**에서 동 투자신탁으로 전환하거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다른 개인연금저축에서 동 투자신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